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13
----------	------

발의연월일 : 2020. 12. 1.

발 의 자 : 민형배·김철민·양경숙
이소영·이용빈·이정문
임종성·주철현·홍성국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

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도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신설).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함
(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 방안

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다. 그 밖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연차별 목표
2.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방안 및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경감 방안
4.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
5. 직전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역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구계획을 마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군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분 매입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조성하는 펀드 가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근 주민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5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② (생 략) <u><신 설></u></p>	<p>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 정에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 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 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참여 하는 경우의 지원방안</u> <u>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 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 동조합(이하 “조합”이라</u></p>

8. ~ 10. (생략)
③ (생략)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다)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다. 그 밖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8.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연차별 목표

2.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 방법,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방안 및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경감 방안

4.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

5. 직전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역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구계획을 마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군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

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

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전사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의 지분 매입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가 조성하는 펀드 가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 신설>

⑥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

② (현행과 같음)